

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연결 모법인	① 사업자등록번호	② 법인등록번호
	③ 법인명	④ 전화번호
	⑤ 대표자 성명	⑥ 전자우편주소
	⑦ 소재지	

⑧ 연결사업연도	· · · ~ · · ·	⑨ 법인종류별 구 분	중소 기업	일반기업			⑩ 조정구분	1. 외부, 2. 자기
			중견 기업	상호출자 제한기업	그 밖의 기업			
			30	73	83	93		
⑪ 신고구분	1. 정기신고 2. 수정신고(가. 서면분석, 나. 기타) 3. 기한 후 신고 4. 경정청구							
⑫ 신고일		⑬ 신고기한 연장승인	1. 신청일:		2. 연장기한:		⑭ 사업연도의제	1. 적용 2. 미적용
⑮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		1. 해당, 2. 미해당						

구분	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	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	합계
⑯ 연결수입 금액	()			
⑰ 연결과세표준				
⑱ 연결산출세액				
⑲ 총부담세액				
⑳ 기납부세액				
㉑ 차감납부할 세액				
㉒ 분납할 세액				
㉓ 차감납부세액				

②④ 조정반 번호		②⑥ 조정자	성명			
②⑤ 조정자 관리번호			사업자등록번호			
국세환급금 계좌신고	②⑦ 예입처	은행 (본)지점	②⑧ 예금종류	예금	②⑨ 계좌번호	

신고인은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7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 고 안 내

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·군·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.

첨부서류	1.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	수수료
	2. 각 연결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	
	3.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	
		없 음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1. ① 사업자등록번호란, ② 법인등록번호란, ③ 법인명란, ④ 전화번호란, ⑤ 대표자성명란,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: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⑧ 연결사업연도란: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3. ⑩ 조정구분란, ⑪ 신고구분란: 각각의 해당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4. ⑨ 법인종류별구분: '중소기업' 과 '중견기업' 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증 검토표(연결집단용)(별지 제76호의18서식)상 적합 기업, '상호출자제한기업' 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- "중소기업"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"○"표시합니다.
5. ⑬ 신고기한 연장승인란: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.
6. ⑭ 사업연도의제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(사업연도의제)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"1. 적용"에 체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2. 미적용"에 체크합니다.
7. ⑮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: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)에는 "1. 해당"에 체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2. 미해당"에 체크합니다.
가.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할 것
나.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
다.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
8. ⑯ 연결수입금액란: 연결법인들의 연결(모·자)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(별지 제76호의22서식) ⑮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.
9. ⑰ 연결과세표준란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⑥란의 모법인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⑮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0. ⑱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⑧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⑮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1. ⑲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⑳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㉑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⑳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2. ㉒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㉒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㉓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3. ㉔ 차감납부세액란에는 ⑲ 총부담세액에서 ㉒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14. ㉕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㉕ 분납할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5. ㉖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㉖ 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6. ㉗ 조정반 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.
17. ㉘ 조정자 관리번호란, ㉙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.
18. ㉚ 예입차란, ㉛ 예금종류, ㉜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19. 음영(■)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